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68
----------	-----

2024. 12. 11.(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11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1월 27일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산림국장)

가. 제안이유

-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대한 사무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법’)로 이관 시행(2025. 1. 1.)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 법령에 따라 구성하는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역학조사 실시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개정(제정)의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건법](#)」[일부개정26\)](#)에 따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을 통해 환경성질환 및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하도록 적정히 규정함.
- 또한,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려는 것은 행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26)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중 략- ②~⑦(생 략) → [삭제](#)
<2024. 3. 19.> [시행일 : 2025. 1. 1.]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된 사항과 일치되게 정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타당히 마련함.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25. 1. 1.시행)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²⁷⁾됨으로 삭제 조치
 - 위임 사무²⁸⁾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으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신설 조치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 24. 9. 13.) 등에는 존속이 필요하나 목적과 기능적으로 운영이 드문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한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경우 위원 위촉(’ 22. 6월) 이후 환경보건계획 검토 및 의견수렴(서면 1, 대면 1) 이외 지금까지 개최 상황이 없음으로 비상설화 요건이 해당된다 볼 수 있음.
 - 지역환경보건의 실무에는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타당히 규정함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27)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① 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28)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환경보전법」의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을 준용하여 규정함.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비상설운영에 관한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 규정함.
 - 안 제7조는 도지사의 역학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함.
 - 안 제8조는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충청북도의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예고(‘24. 10. 14.~‘24. 11. 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전부개정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함.
- 다만, 제4조(위원회 구성) 제3항의 위원의 위촉·임명은 경우에 따라 도민의 권리 제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4. 검토의견

- 법리적 측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개정과 일치되게 정비하였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에 따라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정성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강구하였음.
- 또한,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적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하였다고 사료됨.
- 다만, 충청북도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²⁹⁾」로 규정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는 민주·투명·효율·공정성 등을 향상하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기에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또한 이에 부합되도록 아래 사항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 환경보건위원회 〉

☞ 제4조(위원회 구성) 제3항 다음 각 호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인’ 포함 여부

현 행	개 정 안
1. <u>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인</u> 2. 환경보건 전문가 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3. 환경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9) 제3조(기본원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원회를 도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안번호	제768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8
----------	-----

제출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환경보건법」 개정('25. 1. 1. 시행)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업무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불필요한 조항 정비 및 조문 수정을 통해 간결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 수립(안 제2조)
-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3조 ~ 제6조)
-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안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충청북도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그 밖에 충청북도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심의·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제7조(역학조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영향조사반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환경보건법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

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제11조제4항 관련)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장 차 은 녀